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속한 보호조치 필요시 피해학생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20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11. 6.

다. 회 부 일 : 2024.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은 정보통신망에 장기간 유통될 가능성이 커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초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등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u>대리인</u> 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 ----- <u>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u> ----- ----- ----- <u>삭제지원요청자</u> 는----- -----.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u>제4항</u> 에 따른	⑥ ----- ----- <u>제5항</u> -----

현행	개정안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딥페이크(deepfake)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의미함. 최근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되는 등 성범죄가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교육부는 매주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조사했는데, 2024년 11월 1일 기준 피해 교원은 33명, 피해 학생은 883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

구분	피해 신고(건)				수사 의뢰(건)				삭제지원 연계(건)	피해자 현황(명)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학생	교원	직원등
누적합계 (1.1.~11.01.)	552	17	238	297	467	17	209	241	247	920	883	33	4
1차조사 (8.27. 기준)	196	8	109	79	179	7	96	76	97	196	186	10	0
2차조사 (9.6. 기준)	238	4	70	164	171	4	55	112	87	421	402	17	2
3차조사 (9.13. 기준)	32	1	14	17	31	1	14	16	14	105	104	0	1
4차조사 (9.27. 기준)	38	3	16	19	36	1	16	19	20	111	107	4	0
5차조사 (10.4. 기준)	5	0	2	3	5	0	2	3	1	7	5	2	0
6차조사 (10.11. 기준)	7	1	4	2	10	4	4	2	11	10	10	0	0
7차조사 (10.18. 기준)	17	0	9	8	16	0	8	8	11	27	27	0	0
8차조사 (10.25. 기준)	9	0	7	2	9	0	7	2	4	24	24	0	0
9차조사 (11.01. 기준)	10	0	7	3	10	0	7	3	2	19	18	0	1

자료: 교육부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비롯한 사이버폭력¹⁾에 해당하는 촬영물 유포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 예방법”이라 함) 제16조의4는 국가가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략)

삭제를 위한 지원의 내용으로, 교육부장관은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 수집,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²⁾.

그러나,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영상물등은 정보통신망 특성상 유포 후 급속히 확산되며, 확산된 영상물은 삭제 조치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다운로드된 영상물의 삭제는 불가능하여 장기간 유포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포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

2)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3.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피해학생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장이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촬영물등의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여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입법례로,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함)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 등이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 입법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다만, 성폭력방지법에서는 삭제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이 가능한 불법촬영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해당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촬영물의 범위와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의 개념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강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삭제 지원 요청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³⁾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불가

능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피해학생 등의 동의 없이 삭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범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요청 없이도 촬영물등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성폭력방지법을 준용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삭제지원요청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⁴⁾에 따른 정

- 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하 생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보주체의 권리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촬영물등 삭제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4

4)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